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5-70 |
|----------|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5. 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정이유

저소득 구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,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와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생활보장위원회 기능(안 제2조)

-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는 사항 명시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항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
- 「기초연금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·결정에 관한 사항

나.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및 제4조)

-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
- 위원장 : 구청장, 부위원장 : 위원 중에서 호선
- 공무원 : 복지교육국장 및 심의안건 관련 부서의 장
- 민간위원 :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,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

- 간사 : 생활보장과장, 서기 : 기초보장팀장
-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

다.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명시

라. 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및 제7조)

- 위원의 해촉 및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 명시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0조(생활보장위원회)
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
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2조제4항
 「기초연금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3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
 되지 않음

4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5. 6. 25. ~ 7. 15 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다.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(2015. 8. 18)

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항
2.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
3. 「기초연금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·결정에 관한 사항

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복지교육국장 및 심의안건 관련 부서의 장

2.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

3.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생활보장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초보장팀장이 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, 참석위원 명단, 회의 안건과 심의·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

3.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
제7조(비밀유지)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,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전에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,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② 위원회의 구성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로 대신한다.